**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긴장 상황 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을 우선으로 다루도록 촉구**

제네바 (2017년 3월 10일) – 유엔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6월 지명 후 처음으로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핵 실험을 재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해당국과 주변국 간 정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립전문가그룹은 실질적인 책임 규명 방안을 살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권이사회는 소냐 비세르코와 사라 호세인을 독립전문가로 임명하고, 특별보고관을 지원하여 책임 규명 사안을 살피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특별보고관 오헤아 퀸타나는 근래 정치 상황 변화와 무력화 추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 공동체에서 더욱 고립되었고 인권을 논의할만한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안보 및 정치 상황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예측되면서 인권을 유화적으로 논의할만한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한이 많이 지났지만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국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 간 대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화 기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창구로 당국이 적극 기회를 이용하길 촉구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식량 배급 체계 결점, 정보 접근 제한, 해외노동자 국제 근로 기준 위반 등 주요 사안 관련 최근 전개 상황을 개괄한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일본 및 대한민국 국적자 납치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루된 해명되지 않은 강제 실종 사례 등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특별보고관 오헤아 퀸타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근래에 이탈한 이들과 만나는 등 여러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들은 역경을 겪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국제공동체가 수 년 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해당국 주민을 보호하도록 지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지금까지 직접 접한 증언은 이를 확신하게 만들었다.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하여 국제공동체가 목표 달성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특별보고관은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이 보고서 권고 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는 특별보고관 보고서 부속서로 제출된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책임 규명 틀(framework)은 인반드시 인권을 바탕으로, 피해자 권리와 필요를 중심으로 책임 규명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의 경험과 의견, 정의 실현 기대를 반영하는 책임 규명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기에 “다각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 규범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개인 형사 책임을 규명하는 조치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가 인권 침해 진실을 알 수 있는 권리,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책임 규명은 앞서 언급한 사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고, 여러 장(forum)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독립전문가그룹은 덧붙였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기타 국가 국내 제도 하에서, 국제재판소 또는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재판소를 통해서, 그 밖에도 국제 인권 제도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방안 모두를 보고서에서 검토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내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우선적인 의무주체자”라고 재차 강조했으나 한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체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존재하거나 국내에서 활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독립전문가그룹은 국제공동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권고”하면서 “임시 국제 재판소를 설립 범위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범죄를 억제하면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또한 보고서에 포괄적으로 책임 규명을 추진하도록 즉각 취할만한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책임 규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실질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식 고취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와 기타 관계자와 조율하여 여러 사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더하여 독립전문가그룹은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가용 정보와 증거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조사 및 소추 전략을 마련하며, 적절한 국제 재판 모델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특별보고관과 독립전문가그룹은3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제네바 시간 기준)에 공동 기자 회견을 개최한다. 장소는 팔레 데 나시옹(Press Room 3, Palais des Nations)으로, 모두발언문은 발표 후 [링크](https://iconnect.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2CDanaInfo%3Dwww.ohchr.org%2BSRDPRKorea.aspx)에서 볼 수 있다.

 **(\*) 특별보고관 보고서** (advance edited version: [A/HRC/34/66](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34/Pages/ListReports.aspx)) **및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는** (advance edited version: [A/HRC/34/66.Add1](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34/Pages/ListReports.aspx)) **각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끝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링크*](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를 참조하십시오.*

***소냐 비세르코****(세르비아)는 인권최고대표에 의해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하도록 임명되었다.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 창립자 겸 회장직을 역임했고, 베오그라드 국제관계 포럼 반 전쟁 운동 센터 창립 구성원이다.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사협회, 오슬로 대학 인권상 등을 수여받았다. 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COI) 일원이다.*

***사라 호세인****(방글라데시)은 인권최고대표에 의해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하도록 임명되었다.방글라데시 대법원에서 20년 이상 법정변호사로 표현의 자유, 경제 및 사회적 권리, 젠더 정의 등 헌법 및 공익 관련 변호를 중점적으로 맡았다. 국제인권보호센터 남아시아 프로그램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이끌었고, 국제법률가협회장 이사직과 남아시아 펀드 창립 이사직을 역임했다.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사협회 등에서 다수 수상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링크*](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GroupofIndependentExpertsonAccountability.aspx)*를 참조하십시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보고관은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Tarek Cheniti (**tcheniti@ohchr.org**), 또는 Sebastiaan Verelst (*[*gie-dprk@ohchr.org*](https://iconnect.ohchr.org/EN/NewsEvents/Pages/%2CDanaInfo%3Dwww.ohchr.org%2Bmailto%3Agie-dprk%40ohchr.org)*)로 문의주십시오.*

기타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Bryan Wilson, UN Human Rights – Media Unit (+ 41 22 917 9826 / [mediaconsultant1@ohchr.org](https://iconnect.ohchr.org/Lists/News/%2CDanaInfo%3Dwww.ohchr.org%2Bmediaconsultant1%40ohchr.org))

**태그 및 공유 - Twitter:**[**@UNHumanRights**](https://iconnect.ohchr.org/%2CDanaInfo%3Dtwitter.com%2BUNHumanRights)**, Facebook:**[**unitednationshumanrights**](https://iconnect.ohchr.org/%2CDanaInfo%3Dwww.facebook.com%2CSSL%2Bunitednationshumanrights)

 - 보도 자료: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350&LangID=E#sthash.bB6k2bKr.dpuf>